

법률사무에 관한 내규

제정 2022.05.26.

개정 2024.04.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경상북도체육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및 법률자문 등 법률사무의 처리기준과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률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소송”이라 함은 경상북도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소송을 말한다.
- “법률자문”이라 함은 체육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법률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 “주관부서”라 함은 소송업무를 비롯한 법률사무를 수행하고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소관부서”라 함은 소송사건 또는 법률자문 사안 발생의 원인이 된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체육회의 법률사무 처리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법률자문단 <개정 2024.04.17>

제4조(위촉) ① 체육회장은 체육회 소관 업무에 식견 또는 경험이 있고

개업 중인 변호사, 노무사, 법무법인, 법무조합(이하“법률자문단”이라 한다.) 중 공개모집 또는 체육회 소속 실·부서나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자를 법률자문단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4.04.17>

② 법률자문단의 수는 5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24.04.17>

③ 법률자문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필요에 따라 법률자문단의 임기를 1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04.17>

④ 연임 여부는 임기 중의 실적, 성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한다.

⑤ 법률자문단의 임기는 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4.04.17>

⑥ 월정자문료 지급은 위촉 시 별지 제1호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월정자문료 지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되 구체적 내용은 상호협의를 의해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04.17>

제5조(위촉제한) 체육회장은 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 「변호사법」 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공인노무사법」 제28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률자문단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4.04.17>

제6조(해촉) ① 체육회장은 법률자문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04.17>

1.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기피·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2. 체육회와 관련된 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한 경우가. 소송행위

나. 법률자문

다. 내용증명우편 발송

라. 「변호사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직무행위

3. 소송 또는 법률자문 평가결과 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

4. 법률자문단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개정 2024.04.17>

5. 체육회의 업무상 비밀 유출 등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제7조를 위반한 경우

7. 기타 사정으로 법률자문단 활동이 곤란한 경우 <개정 2024.04.17>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촉된 법률자문단은 해촉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간 재 위촉될 수 없다. <개정 2024.04.17>

제7조(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법률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체육회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04.17>

1. 체육회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

2. 체육회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하려는 경우

제8조(보수 등의 지급) 체육회장은 법률자문단에게 소송사건 등을 위임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04.17>

② <삭제 2024.04.17>

제9조(특례) <삭제 24.04.17>

제3장 소송업무

제1절 소송대리인의 선정

제10조(소송대리인의 선정) ① 소송대리인의 선정은 보수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등 중요사건일 경우 공개모집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의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1.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소제기 기간 임박 등의 사유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심급을 달리하는 동일사건, 유사사건의 소송으로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특정 소송대리인 등을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3. 공개모집방식에 복수의 소송대리인이 참여하지 않은 경우
4.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5. 소송 보수가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신설 2024.04.17>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체육회 소송 수임 건수가 체육회 외부위임 총 소송 건수의 50% 이상인 소송대리인(정부법무공단은 제외)은 1년 이내에 수의계약으로 수임할 수 없다.

③ 체육회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과거 소송수행 평가결과, 전문성, 소송 수행 실적, 관할 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제2절 소송업무의 처리

제11조(소의 제기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소관업무 중 소송에 의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이나 체육회가 당사자인 사안에 대하여 사전에 주관부서와 협의를 거친 후 사건경위 및 제반증거자료를 첨부

하여 소의 제기 또는 응소 의뢰를 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제1항의 관련자료 등을 검토한 후 당해 사안에 대하여 체육회장의 결재를 받아 제소 또는 응소방침을 확정된 후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강제집행보전조치) 주관부서의 장은 장래 강제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목적물 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소송진행 중의 조치) ① 소관부서의 장은 소송 진행 중인 경우에도 소송외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주관부서와 협의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소송업무처리상 주관부서가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주관부서는 소송에 관한 변론이 실시되었을 때에는 그 진행경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판결에 따른 조치) ① 각 심급별로 종국판결이 선고되었을 때에는 주관부서는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는 판결문 등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지체없이 체육회장에게 보고하고, 소관부서의 장 및 소송대리인 등과 협의하여 상소 등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최종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을 종결처리하고 소송 종결사실을 체육회장에게 보고하고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종결처리된 경우 판결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소송비용 회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승소판결(일부승소 포함)로 사

건 종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원심법원에 소송비용액의 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지급을 최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아 소송비용액의 결정신청을 하지 않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소송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무지로 체육회를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2. 소송 상대방이 지급 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소송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4. 소송대리인이 체육회 임직원인 사건으로 소송비용이 경미한 경우
5. 소송비용의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금액이 소액인 경우
6. 공익소송 등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7. 그 밖에 소송비용의 회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제4장 법률자문 업무

제16조(법률자문절차) ① 체육회의 각 부서에서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부서의 장의 확인을 거쳐 별지 제2호서식의 법률자문요청서를 법률자문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4.17>

② 소관부서는 법률자문결과를 받은 후에는 그 내용을 주관부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7조(법무현황 공개) চেয়ক회장은 법률자문단 위촉현황, 법률자문 실적 및 소송 수행 현황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চেয়ক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04.17>

부 칙(2022. 05. 26.)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2. 5.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04. 17.)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회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4조제5항 관련)

법률자문계약서

경상북도체육회(이하 “甲”이라 함)과 법무법인 000(이하 “乙”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동의하고,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법률자문의 위촉)

본 계약 체결일자로, “乙”을 “甲”의 법률자문으로 위촉하고, “乙”은 이를 수락한다.

제2조 (위임사무의 범위)

“乙”은 “甲”의 일반적 법률문제의 상담 및 의견의 제시, 계약서 등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검토, 법률자문이 요구되는 기타 모든 법률문제에 관한 자문에 응하며, 소송, 비송, 심판, 중재, 화해, 조정 및 인허가신청 사건이나 재산 소유권 및 행정소송, 민·형사 사건 등에 관한 제반 신청 및 쟁송사건, 기타 변호사법상의 법률사무에 관하여 “甲”의 대리인으로 지정되는 것에 동의한다.

제3조 (신의성실 및 품위유지)

- “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甲”으로부터 수임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乙”은 위 제1항의 사무 처리에 있어 변호사로서의 품위와 직업윤리를 준수하여야 하며 “甲”은 이에 반하여 사무 처리를 위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법률자문 등의 보수)

- “甲”은 “乙”에게 법률자문료로 월 만원(혹은 연 원)을 매월 초순경에 선불(또는 20 . . .자에 선불)로 지급한다(단,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위 법률자문료는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법무법인 명의로

송금하고, “乙”은 “甲”이 지정하는 소속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부한다.

2. 소송사건의 수입료는 소송내용과 난이도 등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5조 (비밀유지)

“乙”은 본 계약상 “甲”을 정한 사무의 처리과정에서 지득한 “甲”의 일체의 사업상, 재산상의 비밀을 임의로 타인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甲”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이해충돌의 회피)

1. “乙”은 “甲”의 동의가 없는 한 이미 “甲”이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그 직접 상대방을 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甲”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乙”은 “甲”과 관계된 소송 및 사건에 대해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위촉기간)

본 계약에 의한 법률자문의 위촉은 20부터 20(1년간)까지로 한다.

단, 동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의 서면에 의한 계약종료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기간 자동 연장된다.

제8조 (관할)

본 계약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甲”과 “乙”은 협의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우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에 관하여는 대구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상기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각자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甲 : 경상북도체육회 ①

乙 : ○ ○ ○ ①

[별지 제2호서식] (제17조 관련)

법률자문의뢰서

자문번호	자문일시
------	------

질의부서	
질의명	
질의요지	
관련법령조문 또는 행정규칙 조항	
법률적 쟁점과 각 이유	쟁점1. “상세히 기재”
	쟁점2.
부서의견	

경상북도체육회